

정관

정 관

1차 개정 2007. 02. 22
2차 개정 2009. 02. 18
3차 개정 2010. 04. 29
4차 개정 2011. 02. 23
5차 개정 2014. 09. 11
6차 개정 2015. 02. 23
7차 개정 2016. 02. 24
8차 개정 2022. 10. 18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영문명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영문약칭 OCAP)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기업의 소비자 전문가 조직으로서 소비자상생체제 확산 및 기업의 소비자 부문 위상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 관련 정책 활동 및 의견 개진
2. 소비자 관련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
3. 소비자 관련 상담·자문 및 공동 대응
4. 소비자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5.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출판 관련 사업
6. 소비자 상생체제 확산 및 지원 관련 사업
7. CCM인증 활용·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총회의 의결로서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본 협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기업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 활동은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대표한다.
- ③ 제2항 이외의 회원은 준회원으로 회장단의 승인을 거쳐 가입 또는 활동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최초 회원가입 시 별도의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기타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② 회원은 협회의 활동을 위해 제1항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가입비, 특별회비, 준회원 회비, 연회비는 과오납 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준회원이 중도에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등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회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규정 준수
- 2. 총회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납부의 의무
- 4. 품위 및 비밀 유지

제10조 (탈퇴) ① 회원인 기업 또는 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의 정지, 제명 등의 경고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2.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3. 기타 이사회에서 경고 조치 등의 제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대상이 된 회원이 협회 이사진인 경우, 동 회원에 대한 당해 제재 의결 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 ①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이사장으로 한다.

②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 1인
2. 회 장 : 1인
3. 부회장 : 5인 이내
4. 이 사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③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민법상의 이사는 제2항의 임원의 명칭과 무관하게 회장,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제13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회원단체 소속이거나 협회의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로 추대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을 한다.

제14조(회장) ① 회장은 정회원사의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③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

④ 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회의를 주재한다.

제15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회장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 또는 가능한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① 이사는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그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원사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이사는 협회 운영상 제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권을 가진다.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그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2.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미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전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 총회 소집

③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와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9조 (보선) 회장의 임기 내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 동안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유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임시총회에서 잔여임기 동안 보궐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 임원에게는 소정의 업무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임원,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감사가 승인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에는 선지급하고 후 감사의 추인을 받는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때
2.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3. 1년 이상의 잔여임기를 가진 회장이 유고 된 때
- 4. 감사가 소집할 때

제23조(소집의 방법)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결권)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결권은 정회원의 책임자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회원의 책임자는 그 기업(단체)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 특정 정회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정회원은 동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 총회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하는 경우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된 의견은 다수 의견에 포함한다.

제26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회장,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 의 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는 필요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장단 회의

제27조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권한)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②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안건 및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 결에 의해 회장단에 위임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참석한다.

제28조 (회의의 소집) ①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단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 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은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 (의결방법) ① 회장단 회의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투표로써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대리출석) 회장단 회의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참석을 불허한다.

제6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특별히 대외협력에 관한 안건으로 이사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나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중요한 업무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차기 회장 추천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가입비 및 회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장단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 (회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다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외협력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정기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권을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된 의견은 다수 의견에 포함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결사항 중 서면결의로써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범위를 정해 결정이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대리참석) 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기업(단체)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회의록

제35조 (회의록) ① 총회,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방명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 것으로 구성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 찬조금품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5. 그 외의 수입 및 부채

제37조 (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38조 (사업실적과 예·결산) 본 협회의 수지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예산계획서
2. 결산보고서
3.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4. 감사의견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9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기부금의 공개) ① 본 협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본 협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본 협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사무국 및 협회 제조직

제42조 (위원회) ①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해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목적을 위한 사안에 따라 건의 또는 시정 권고 및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가 되는 제16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는 업역별 또는 기능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얻는다.

제43조 (사무국)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44조 (직제 및 정원)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45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회장은 임면권을 사무총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 기준, 승진 기준, 보수 기준, 복무 기준 등의 규정은 회장이 정한다.

제10장 대외협력

제46조 (소비자부문 최고책임자 협의회) ① 협회는 실무적 활동에 대한 지원, 대외활동의 위상제고를 위해 소비자부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최고책임자 협의회 구성원은 본 협회 이사장 및 회장, 회원 기업의 소비자부문 총괄 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소비자중심경영 협의회) ① 협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지원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용·확산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소비자중심경영 협의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및 이에 관심을 가진 본 협회 회원 기업으로 하되,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중심경영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8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해산) ①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50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① 본 협회의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제12장 보칙

제51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은 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0년 1월 30일 개최한 총회는 최초의 창립총회 및 정기총회를 대신한다.